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권 회 경[†]

고려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장 재 흥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재회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 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정도와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중, 고등학교 여학생 526명이었다. 성피해 내용을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가벼운 언어적 성희롱에서부터 강제적인 성폭력행위가 포함되었다. 성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전체 조사대상의 4.0%, 상당한 성피해 집단은 4.8%, 그리고 가벼운 성피해 집단은 19.6%, 미피해 집단은 71.7%였다. 성피해 심각도에 따라 성폭력 인식정도와 자기 손해적 성행동이 서로 다른가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성폭력의 인식정도가 낮았다. 둘째, 심각한 성피해 집단과 상당한 성피해 집단은 가벼운 성피해 집단과 미피해 집단보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다. 셋째, 이성교제의 성적 접촉의 비율은 이전의 성피해가 심각할수록 더 높았다. 넷째, 이성교제의 원칙 없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비율에서, 심각한 성피해 집단의 거절비율이 더 낮았다. 다섯째,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관계악화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피해가 심각할수록 성폭력 인식정도가 낮고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더 많이하여, 성폭력에 재회생될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희롱, 성폭력, 성적 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자기손해적 성행동

[†] 교신저자 : 권회경,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전화 : 02-3290-1701, Fax : 3290- 2550, E-mail : heepsy@mail.korea.ac.kr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법제화에 발 맞추어, 성폭력의 실태 및 그 후유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당한 성폭력 피해는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며, 피해의 빈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의 성폭력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고생의 30.3%는 가벼운 성추행, 5%는 강제적 키스, 애무 및 성관계 등의 심각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재엽, 이근영, 1998).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순결을 잃은 상실감, 우울감, 몸서리쳐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인관계의 회피, 알콜이나 약물남용, 성기능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적 후유증을 나타낸다(김정규, 김중술, 2000; 박성민, 1999; 안옥희, 2000; 조구이, 1992; Gindycz & Koss, 1989; Briere & Runtz, 1987; Jehu, 1988).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피해자들보다 불안장애, 공포, 및 우울증의 발병률이 더욱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Friedrich, 1990).

청소년 성피해자들은 성적 부적응 측면에서 성인 성피해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인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 성기능 장애, 성적 접촉 및 성적 활동의 감소, 성 만족도의 저하, 성에 대한 피해 망상적 사고 등 성기능과 성활동의 감소를 주로 보인다(Burgess & Holstrom, 1995; Sogori, 1982; Willy & Bernadine, 2000).

이에 반해 아동기나 청소년기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적 활동이 정상인보다 더 많거나 혼란스러운 성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lasser와 Frosch(1988)는 성폭력 피해경험을 한

아동들에게서 미성숙한 성애화 현상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미성숙한 성애화란 말이나 놀이에서 잦은 성적인 몰두나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주 성애적 관계를 맺으며 남성에 대해 적절치 않은 회피반응을 하지만 대신 잦은 수음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기 성폭력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Meston, Heiman, & Trapnell, 1999)에서도 어린 시절에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성장기에 연령보다 조숙한 성행동을 했거나 성충동, 성적 환상, 성적 개방성, 성경험, 및 자위행위빈도가 더욱 높은 것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여성개발원(1992)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기의 성피해 경험은 조기성관계, 나이에 부적합한 성적 행동, 그리고 공공연한 자위행위와 관련이 높아, 성폭력 경험이 이후의 성적 발달과 성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성민(1999)의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의 성피해 경험은 동성애적 욕구, 자위행위, 혼전성관계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린 시절의 성폭력경험은 성에 관한 혼란스런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피해자들은 성 피해에 재회생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Wyatt, Guthrie와 Notgrass(1992)는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재회생될 가능성이 2배에서 4배가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재회생의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무망감과 무력감(Briere, 1992), 낮은 자아존중감과 성역할의 혼란(Maltz, Bowman, Pellow & Schneider, 1989)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MacDonald, Lambie와 Simmons(1995)에 따르면, 성 피해 청소년들은 낮은 성적 자존감(poor sexual self-esteem)과 혼란된 성적 지향(confused of sexual orientation)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이 후의 재회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성과 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성 교제 중에 성적 행동을 요구받는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성적 요구에 대하여 무력감을 경험하였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No”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욕구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해자의 눈을 통하여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관계를 맺게 되며,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고, 성 활동을 애정과 친밀함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p.185-188).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성적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성적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부적절한 성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청소년의 부적절한 성행동이란 크게 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자포자기한 타락 충동으로 인하여 실제로 배춘이나 원조교제에 쉽게 빠지며, 자기의 성을 도구나 상품화하기 쉽다(이명선, 1989).

두 번째는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가 모호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타인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적절히 거절하거나 회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성피해자들은 성폭력을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관계를 갖거나(McDonald, Lambie, & Simmons, 1995),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으로 성관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정규와 채규만, 1997). 특히, 아동

피해자나 근친상간 성피해자들은 흔히 애정표현이나 관심과 성폭력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혼란스런 성개념을 형성하여서 상대의 성관계 요구를 애정표현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동 및 청소년 성피해자들은 낮은 성적 자존감과 무력감,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성피해에 재회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적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로, 성 피해자들이 이성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기 손해적인 성 행동을 하기 쉽고, 그래서 ‘재회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이성간의 교제 중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Coker, McKeown & King, 2000)을 주목한다면, 성피해자들이 이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여러 성폭력적 행위들을 과연 얼마나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적인 부분에서 자기 손해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강제성을 띤 성폭력의 장면이 아닌 이성교제의 장면에서 청소년 성 피해자들이 어떠한 성적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는지, 그들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성적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물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크게 두 가지 연구과제를 검증할 것이다. 첫째, 성 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성 교제시 성 피해자들의 자기손해적 성행동을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자기손해적 성행동’은 ① 연령에 맞지 않은 성적 접촉 수준 ② 성적 자기결정권의 여부, ③ 성관계시 피임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성폭력 피해에서부터 가벼운 성희롱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친족으로 부터의 폭력이나 강간 및 강간미수와 같은 성피해를 당한 자)들에 한정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성 피해자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심각도에 따라 성적 태도와 성적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 피해 심각도에 따라 성폭력의 인식정도가 다른가.

연구문제 2. 성피해 심각도에 따라 자기 손해적 성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중, 고등학교 여학생 총 526명이었다. 이 중 중학생은 250명, 고등학생이 276명이며, 중학생 중 2학년은 166명, 3학년은 88명이고, 고등학생 중 1학년은 72명, 2학년은 202명이었다. 연구에 협조 가능한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1, 고3 학생들이 제외되었다.

구체적인 응답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자료수집방법 및 분석방법

200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설문지의 협조를 구한 후 교실에 설문조사원이 들어가 간단한 설명을 한 후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통계프로

표 1. 응답자의 배경정보 빈도 (%)

변인	중	고	전체	
성적	10등 이내	80 (15.4)	98 (18.8)	178 (34.2)
	10등-20등	78 (15.0)	79 (15.2)	157 (30.1)
	20등-30등	55 (10.6)	65 (12.5)	120 (23.0)
	30등-30등	35 (6.7)	31 (6.0)	66 (12.7)
	30등 이하	248 (47.6)	273 (52.4)	521 (100.0)
	전체	248 (47.6)	273 (52.4)	521 (100.0)
가출 경험	가출 없음	217 (41.3)	226 (43.0)	443 (84.4)
	1번	15 (2.9)	20 (3.8)	35 (6.7)
	2번	9 (1.7)	11 (2.1)	20 (3.8)
	3번 이상	8 (1.5)	19 (3.6)	27 (5.1)
	전체	249 (47.4)	276 (52.6)	525 (100.0)

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

성폭력피해 측정

성폭력 피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1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가벼운 성희롱에서부터 강제 성추행, 그리고 강간에 이르는 내용을 담았다.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문항들로

는 ①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나 평가, ② 불쾌한 성적농담과 음담패설, ③ 음란물의 공개적 노출이다. 성추행 문항들로는 ① 공공장소에서의 낯선 사람의 성추행 ② 데이트중의 강제적 키스나 애무, ③ 권위 혹은 친밀함을 빌미로 한 신체적 접촉 ④ 외진 곳이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일회적 성추행이다. 가장 심각한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① 강제로 가족이나 친지, 혹은 손윗 사람에게서 반복적인 성추행 ② 강간 및 강간미수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가해대상, 피해시기 및 반복횟수에 따라 일정한 가중치를 주어 각 개인의 성 피해점수를 산출하였다¹⁾. 점수가 높을수록 성 피해가 심각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체 조사대상 526명의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피해 질문지를 실시하고 성 피해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들의 성 피해점수에 따라 심각한 성피해 집단, 상당한 성피해 집단, 가벼운 성피해 집단, 미피해 집단으로 나누었다.

성폭력 인식수준의 측정

성폭력의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문항 10개에 대하여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1점에서 5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성폭력 피해 측정에서 사용된 10문항과 동일한 문항이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각 문항에 대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자기 손해적 성행동의 측정

본 연구에서 자기 손해적 성행동은 자신이 피해를 입기 쉬운 방식으로 성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 손해적 성행동은 연령에 적합하지 않게 과도한 성애적 행동, 자기 주도적이기 보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실행되는 성행동, 그리고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아 임신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행동 등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성행동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① 연령에 맞지 않은 성적 접촉의 수위 ② 성적 자기결정권의 여부, ③ 성관계시 피임여부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보조문항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실제적인 자기 손해적 성행동과 연관이 높은 혼전 성관계의 허용성을 묻는 4개의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혼전 성관계의 허용성은 '결혼전 성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자신의 경우,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 4문항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은 1점 '절대 있을 수 없다' 에서부터 5점 전적으로 '가능하다' 까지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혼전 성행동에 대하여 허용적이고, 자유스러운 것을 나타낸다.

1) 10개 피해문항들 중 성희롱에 해당되는 1, 2, 3, 4 문항 내용의 피해경험에 대하여 가해대상과 피해시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각 2점을 부여함. 5, 6, 7, 8 문항에 대하여 3점을 부여하고, 가해대상이 가족, 친지 및 권위자였을 경우, 가중치 1점을, 이 행위가 반복적이었을 경우, 가중치 2점을 부여함. 문항 9와 10에 대하여 5점을 부여하며, 가해대상이 가족, 친지, 및 권위자였을 경우, 3점을, 그리고 반복적이었을 경우 가중치 3점을 부여하였음.

결 과

성피해 경험과 심각도

전체 조사대상 526명의 성 피해점수를 산출하

였다. 그들의 성 피해점수에 따라 심각한 성피해 집단, 상당한 성피해 집단, 가벼운 성피해 집단, 미피해 집단으로 나누었다. 표 2에서 각 집단별 성피해 빈도 및 성피해 점수를 제시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피해 점수 평균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448, n.s.$). 그리고 피해수준별 중, 고등학생의 비율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피해수준의 비율에서 차이가 없었다($\chi^2=1.258, n.s.$).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526명 중 21명(4.0%)으로, 피해점수의 범위는 18점에서 35점이며 성피해 점수의 평균은 25.69이었다.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아동기부터 최근

시점까지 권위자, 가족 및 친지에게 강제적이거나 회유적 방법으로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했거나 권위자·가족·친지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 혹은 강간미수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

상당한 성피해 집단은 총 25명으로 조사 대상의 4.8%를 차지하였다. 성피해 점수의 범위는 9점에서 17점으로 평균은 12.7점이다. 이들은 동료 및 선후배간의 성추행, 혹은 으스스한 곳이나 혼자 있을 때 성추행을 3회 이상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가벼운 성피해 집단은 총 103명으로 조사대상의 19.6%를 차지하였다. 성피해 점수범위는 2점에서 8점이고 피해의 평균은 3.67점이다. 이들은 언어적 성희롱을 한 두 번 이상 경험하거나 일회적인 성추행을 경험한 사람이다.

미피해 집단은 조사대상의 71.7%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표 2. 성피해 빈도 및 성피해 점수

피해 수준		중학생 (n=250)	고등학생 (n=276)	전체 (N=526)
심각한 성피해	빈도	12	9	21
	비율	5.3%	3.3%	4.0%
	평균	27.84	27.2	28.52
	SD	7.41	8.51	7.32
상당한 성피해	빈도	11	14	25
	비율	4.0%	4.7%	4.8%
	평균	12.8	12.1	12.8
	SD	2.25	2.15	2.43
가벼운 성피해	빈도	64	39	103
	비율	25.6%	14.1%	19.6%
	평균	3.67	3.87	3.74
	SD	1.98	1.85	1.92
미피해	빈도	163	214	377
	비율	65.2%	77.5%	71.7%
	평균	0.00	0.00	0.00
	DS	0.00	0.00	0.00

성피해 수준에 따른 성폭력의 인식

연구문제 1의 ‘성 피해 심각도에 따라 성폭력의 인식정도가 다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폭력 상황들에 대한 성폭력 인식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폭력 인식점수의 평균과 표준편

표 3. 피해수준별 성폭력인식점수의 평균 과 표준편차

피해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미피해	278	41.41	6.39
가벼운 피해	72	39.65	7.82
상당한 피해	19	40.84	5.03
심각한 피해	17	37.18	9.25
전체	386	40.87	6.82

표 4. 피해수준별 성폭력인식점수의 일원변량분석

변산원	SS	df	MS	F
집단간	420.779	3	140.260	3.067*
오차	17466.7	382	45.724	
전체	17887.5	385		
Duncan	①②③	④		

주. ① 미피해 ② 가벼운 피해 ③ 상당한 피해
④ 심각한 피해

* $p < .05$

차들, 표 4는 집단간 평균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피해 수준에 따라 성폭력 인식의 점수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Duncan 사후검증 결과 심각한 성피해 집단의 성피해 인식점수는 37.18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3개의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3개의 집단간에는 성폭력 인식정도에서 서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성폭력 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피해 수준에 따른 자기 손해적 성행동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① 연령에 맞지 않은 성적 접촉 ② 성적 자기결정권의 여부, ③ 성관계시 피임여부를 묻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우선 연령에 맞지 않은 성적 접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관련이 깊은 성의식인 혼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성을 알아보았다.

표 5에서 혼전 성관계 허용성에 대한 허용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표 6에

표 5. 혼전 성관계 허용성의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피해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미피해	340	8.84	2.99
가벼운 피해	97	9.73	2.71
상당한 피해	21	11.90	2.96
심각한 피해	20	10.85	3.76
전체	478	9.24	3.06

서 혼전 성관계 허용성에 대한 집단간 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피해 수준에 따라 혼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도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 사후검증에서 미피해 집단과 가벼운 피해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미피해 집단과 상당한 피해집단 심각한 피해 집단 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피해가 심한 집단이 피해가 없는 사람보다 혼전성관계에 대해 더 허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hat{A} \hat{A}$

다음으로 성피해 심각도에 따라 이성교제시 자기 손해적 성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

표 6. 피해수준별 혼전 성관계 허용성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

변산원	SS	df	MS	F
집단간	278.52	3	92.840	10.526*
오차	4180.8	474	8.820	
전체	4459.33	477		
Duncan	①②	③④		

주. ① 미피해 ② 가벼운 피해 ③ 상당한 피해
④ 심각한 피해

* $p < .05$

기 위하여,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나타내는 3문항과 현재의 성적 접촉 경험 유무, 그리고 성적 접촉을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 2문항 등, 5문항에 대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성피해 수준에 따른 성적 접촉경험의 여부는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22.86$, $df=3,1$, $p<.001$). 구체적으로 ‘성적 접촉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심각한 피해집단에서 76%, 상당한 피해집단에서 80%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가벼운 성피해 집단과 미피해 집단은 각각 56.3%, 43.2%로 성적 접촉 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성피해 수준에 따라 이성교제시 성

적 접촉의 수위가 서로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성피해 수준에 따라 성적 접촉의 수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51.71$, $df=3,1$, $p<.001$). 구체적으로, 성관계 및 깊은 애무와 같은 깊은 성적접촉에 응답한 비율은, 심각한 성피해 집단이 56.3%, 상당한 성피해 집단이 30.0%, 가벼운 성피해 집단이 12.5%, 미피해 집단이 8.6%로 나타나, 성피해의 심각도에 따라 이성교제시 성적 접촉의 수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이성교제시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n=256$)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거절하는 정도가 성피해 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 성피해 수준에 따라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비율이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

표 7. 성피해수준별 이성교제시의 성적 행동들 빈도 (%)

		심각한 피해	상당한 피해	가벼운 피해	미피해	전체	χ^2
1. 성적 접촉 경험 (N=526)	있다	16(76.2)	20(80.0)	58(56.3)	162(43.2)	256(48.9)	22.86***
	없다	5(23.8)	5(20.0)	45(43.7)	215(56.8)	270(51.1)	
2. 성적 접촉의 수위 (N=256)	성관계 및 깊은 애무	9(56.3)	6(30.0)	7(12.5)	14(8.6)	36(14.3)	51.71***
	가벼운 스킨십	7(43.6)	14(70.0)	49(87.5)	146(91.4)	216(85.7)	
3. 성적접촉의 거절 (N=256)	거절함	10(62.5)	16(80.0)	44(77.6)	143(87.7)	213(83.2)	8.917*
	거절못함	6(37.5)	5(20.0)	3(22.3)	20(12.3)	43(16.8)	
4. 피임 (N=30)	했다		2(40.0)	1(16.7)	1(10.0)	4(13.3)	4.615
	않했다	9(100.0)	3(60.0)	5(83.3)	9(90.0)	26(86.7)	
5. 거절 못하는 이유 (N=42)	① 오해	3(50.0)	2(33.3)	4(36.4)	6(30.0)	15(35.7)	5.71
	② 관계단절	2(33.3)	1(16.7)	2(18.2)	5(25.0)	10(23.8)	
	③ 방법몰라	1(16.7)	1(16.7)	3(27.3)	3(15.0)	8(19.0)	
	④ 나도원해		1(16.7)	2(18.2)	6(30.0)	9(24.4)	

* $p<.05$. *** $p<.001$

①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할까봐 ② 관계가 나빠질까봐 ③ 거절할 방법을 몰라서 ④ 나도 사랑하고 원해서

으로 나타났다($\chi^2=8.91$, $df=3,1$, $p<.05$). 구체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비율은 심각한 성피해 집단이 37.5%, 상당한 성피해 집단이 20.0%, 가벼운 성피해 집단이 22.3%, 미해 집단이 12.5%로, 심각한 성피해 집단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가장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성교제시 성관계가 있었던 학생들($n=30$)을 대상으로, 성관계시의 피임정도가 성피해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피해 수준에 따라 피임의 이행율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61$, $df=3,1$, $n.s.$). 전반적으로, 성관계를 한 중고생들의 피임율은 13.3%로 매우 낮았으며, 상당한 성피해 집단의 학생들은 응답자의 40%(2명)이 피임을 하였으며, 심각한 성피해 집단에서는 피임을 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다섯째,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거절하지 못한다고 반응한 학생들에게 왜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반응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피해 수준에 따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chi^2=5.71$ df 3, $\alpha<.05$).

그러나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할까봐' 혹은 '관계가 나빠질까봐'와 같은 불안요인에서 거절하지 못한 비율이 전체의 83.3%였으며, 이에 비하여 미피해 집단은 이러한 불안요인에 의한 것이 55.0%였고 '나도 사랑하고 원해서'라는 비율이 30.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성피해 집단이 사랑과 관심을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하여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이상에서 성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자기손해적 성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심각한 성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은 혼전의 성적 활동에서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었고 허용적이었다. 둘째, 이러한 성적 태도와 일관되게 심각한 성피해 집단과 상당한 성피해 집단은 실제 이성교제시 더 깊은 성적 행동을 하였다. 셋째, 성피해가 심각할수록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거절하지 못하는 빈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즉 성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성관계시 피임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섯째, 성적 접촉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성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이 강제적인 성적요구를 애정행위로 오인하거나 관계의 단절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으로 볼 때 성피해가 심각한 청소년들은 실제 이성교제 활동에서 보다 자기손해적 성행동을 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재회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하나는 성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이성교제시의 성적 활동에서 실제로 자기손해적 성행동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여자 중 고등학생 526명의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발생빈도를 살펴본 결과,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조사대상의 4.0%, 상당한 피해 집단은 4.8%, 가벼운 성피해 집단은 19.6%, 미피해 집단은 7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김재엽, 이근영, 1998)와 유사한 결과였다.

둘째, 성피해 수준에 따라 성폭력의 인식정도가 서로 다른지를 탐색한 결과,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도 성폭력 인식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성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폭력과 성관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연구(김정규, 채규만, 1997; 현해순, 199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심각한 성피해 경험자들이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적 접촉시 수위, 성적 접촉시 수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의 거절정도, 성관계시 피임여부를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자기 손해적 성행동과 관련이 많은 혼전 성경험에 대한 허용성, 원치 않는 성접촉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와 같은 구체적 성행동들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미피해자들에 비해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으며, 실제 성적 접촉 빈도는 더 높았으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비율은 더 낮았고, 강제적인 성적요구를 애정행위로 오인하거나 관계 단절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성이 더 높았다.

이것은 심각한 성피해자들이 이성교제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더 힘들어하며, 그래서 자기 손해적 성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성피해자들이 혼전성관계를 더 빈번히 한다는 기존연구(박성민, 1999), 타인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게 된다는 기존연구(김정규, 채규만, 1997; McDonald, Lambie, & Simmons, 1995)와 일관된다. 또한 성피해가 심각할수록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성적 학대 및 성폭력의 재희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희생화 가설(Briere, 1984)을 뒷받침한다.

한편, 상기의 결과로 볼 때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랑하면 성행위에 응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내적 압력을 받고 있는 듯하다. 현해순(1998)은 이에 대하여 가까운 사람에게 심각한 성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성폭력과 사랑'의 경계를 잘 구별하지 못하여 성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 실질적인 성교육과 자기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가 자칫 이성관계에서의 재희생 원인이 성피해를 당한 여성의 고정화된 특징으로 설명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자기 손해적 성행동은 근본적으로 성피해에 대해 자기를 비난하고,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생각, 즉 순결상실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하겠다. Sgroi(1982)는 이것을 '손상된 물건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로 설명하는 바, 자신은 다른 여성들보다도 성적으로 무가치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받을만한 존재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적 태도와 행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직접 다루어 그들의 성적 영역의 갈등을 명료화한 것으로, 이 연구결과가 앞으로의 성피해자들에 대한 성교육과 성치료를 돕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몇 개 학교의 중고등학생에

한정된 것이므로, 일반화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학교 장면의 수업시간 맥락에서 조사된 것이므로 솔직한 반응을 방해하는 교사요인, 주변 동료요인, 그리고 수치심으로 인한 은폐반응을 통제할 수 없어, 어쩌면 실제보다 성 피해 비율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다 세밀히 통제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 손해적 성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성격특성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자기 손해적 성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떨어진다. 가령, Billingham과 Miller(1999)는 대학생 성피해자들에게 성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에 비해 더욱 과시적이며 착취적인 자기애적 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 피해자들의 특성을 연구하되, 보다 자기손해적인 특성을 측정하여 이를 밝힐 수 있는 연구들이 앞으로 더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심각한 성피해 집단의 사례수는 20명으로 다소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 결과들을 일반화하는데 다소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심각한 성피해 집단은 강간·강간미수 혹은 친족·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례들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 통계적 추론에 필요한 사례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추후에는 보다 장기간의 사례수집을 통해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학대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7-769.

김정규, 채규만 (1996). 성폭력피해의 평가와 심리상담. *성폭력피해 세미나 자료집*.

김재엽, 이근영 (1998). 청소년 성폭력피해실태 및 피해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6(2) 247-271.

박성민 (1999). 성피해의 현황 및 실태와 피해자들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옥희 (2000). 친족 성폭력 피해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 여성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구이 (1992). 성폭행의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광미 (1996).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개발원 (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현해순 (1998).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형사정책연구원 (1991).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Billingham, R. E.; Müller, A. & Hockenberry, S. S. (1999). Narcissitic injury and sexual victimization among women college student. *College Students Journal*. 33(3) 372-379.

Briere, J. (1992) *Child abuse trauma : Theory and Treatment of lasting effects*. Newbury Park. CA. Sage.

- Briere, J. & Runtz, M. (1987). Post sexual abuse trauma: Data and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367-379.
- Boney-McCoy, S. & Friedrich, D. (1995). The psychological sequence of violent victimization in national youth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726-736.
- Burgess, A. W & Holstrom, L. L. (1995). *Rape. Crisis and Recovery*. Robert J. Brady Co.
- Coker, A. L., Smith, P. H., McKeown, R. E., & King, M. J (2000). Frequency and correlat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by typ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4). 553-559.
- Draucker, C. B. (1989). *Counseling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2nd. SAGE Publication.
- Friedrich, W. N. (1990). *Psychotherapy of sexually abus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Norton. New York.
- Finkelhor, W. N & Browne, A. (1985).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 Psychiatry*, 55. 530-541.
- Glasser, D. & Frosch, S. (1988). *Child Sexual Abuse*. Macmillan Education. London.
- Gindycz, C. A. & Koss. M. P. (1989). The impact of adolescent sexual victimization: Standardized measures of anxiety, depression and behavioral deviancy. *Violence & Victims*, 4(2). 139-149.
- Juch, D. (1988). *Beyond sexual abuse: therapy for women who were childhood victims*. Willy;New york.
- MacDonald, K., Lambie, I., & Simmons, L. (1995). *Counseling for Sexual abus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Sauzier, M (1989).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Psychiatry Clinics of North America*, 12(2), 455-470.
- Sgori, S. M (1982). *A Conceptual framework for child sexual abuse*. Lexington Book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2nd ed., SAGE Publication California.
- Willy, V. B. & Bernadine, E.(2000). Problem with sexuality after sexual assault.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11, 235-257.
- Willem, K. & Chris-R, Brewin(1999). The relation of early abuse to cognition and coping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23(6). 665-677.

Perception of Sexual abuse behaviors and Self-detrimental sexual behavior on Adolescents victims

Hee-Kyung Kwon

Korea University

Jae-Hong Jang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with the re-victimization on adolescents sexual abuse victims. The perception of sexual behaviors and the self-detrimental sexual behaviors on sexual victims was examined. The subject were 526 females adolescents. Sexual abuse was measured by 10 items which included verbal sexual harrasment, sexual contact, and attempted or completed rape. Of subjects severe sexual abuse was 4.0%, unwanted sexual contact 4.8%, sexual noncontact 19.6%, nonabused 71.7%. The perception of sexual abuse behaviors and self-detrimental sexual behaviors were measured to exam the difference among four group. First, severe sexual abuse showed more attitude about pre-marital sexual relationship than others. Second, severe sexual abuse and unwanted sexual contact showed more sexual contact than noncontact abuse and nonabused. Third, severe sexual abuse showed less rate of the rejection on sexual demand than others. Fifth, severe sexual abuse had not rejected the sexual demand because of the fear of poor relationship. It means that sexual victims may experience revictimization. It is discusses that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Keywords : Sexual Harrsement, Sexual Abuse, Sexual Attitude, Self Detrimental Sexual Behavior.